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1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24일
제출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의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써 법 제27조에 따라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정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시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청렴한 지방의회 구축의 기초가 되고 있음.
-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22.12.26.)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3.7.25.)를 통해 지방의원 여비제도 개선 및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였음.
- 다. 이에, 이들 권고 사항을 적시에 도입하여 시민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 여행 중 근무지 내 출장에 지급되는 여비를 일비로 제한함(안 제4조 및 별표3).
- 나. 공무용 차량 이용 시의 일비 감액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의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시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3항).

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 위반에 따른 공개사과 및 경고징계시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감액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을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를 “국외여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로 하고, “감액한다.”를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

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월정수당, 여비를”을 “월정수당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3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서울특별시내에서의”를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여행 또는”으로, “일비와 식비만”을 “일비만”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u>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u>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 ----- <u>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u>국외여비</u> , <u>관내출장여비</u> 로 구분한다.	② ----- -- <u>국외여비</u> ----- -----.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u>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u>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u>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u>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u>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u>
② <u>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u>	② <u>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u>
③ 삭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	② -----

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 설>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
----- 감액하
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⑤ -----

----- 제1항
내지 제4항-----
-----월정수당을-----
-----.

[별표 3]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준용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여행 또는 -----
----- 일비만-----
--.
2. (현행과 같음)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1. 국외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구분	준용
철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선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
항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자동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

2. 국외여비

구분		준용
서울특별 시의회	의장·부 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 의장을 제외한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비고

1.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1. 국외 철도·선박·자동차 운임

구분	준용
철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제2항
선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제2항
항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자동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제2항

2. 국외여비

구분		준용
서울특별 시의회	의장·부 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 의장을 제외한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비고

1.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